

서울特別市永登浦區分婁개조費支給條例廢止條例案

審查報告書

시민보사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2년 7월 31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1992년 8월 20일

다. 상 정 일 자 : 1992년 9월 22일

2. 제안설명의요지 (제안설명자 : 保健所長 文仁弘)

가. 제안이유

- 의료보호법 제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및 보사부고시 (제88-69호, '88. 11. 10)에 의하여 1989년 7월 1일부터 서울특별시가 지역의료보험지역으로 결정되어 서울특별시 저소득 주민도 당연적용 피보험자가 되고
- 의료보호법 (법 제4353호, 1991. 3. 1) 제8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만도 의료보호대상이 됨에 따라
- 서울특별시영등포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에 의하여 저소득층 임산부에게 지급되던 분만개조비 지급대상자가 없어짐에 의거 서울특별시영등포구분만개조비 지급조례 폐지

나. 주요골자

- 서울특별시영등포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 (1988. 5. 1, 조례 제52호)로 제정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 폐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金熙中)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영등포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영등포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 제2조 (대상) 규정을 보면 분만개조비의 지급대상자는 “생활보호법 제3조 제1항 제5호 해당자 (즉,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보호기관이 이법에 의한 보호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와 “구청장이 자비분만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되어 있으나

그간 실적을 보더라도 '91년 부터 현재까지 수혜자는 1명뿐으로 실효가 거의 없었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의료보험법 제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및 보사부고시 (제 88-69호)에 의하여 '89년 7월 1일부터 서울특별시 저소득 주민도 당연 적용 피보험자가 되고 의료보호법 (법 제4353호, 1991. 3. 1) 제8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만”도 의료보호대상이 되므로 인해 저소득층 임산부에게 지급되던 분만개조비지급조례는 폐지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 심사결과 원안가결

서울特別市永登浦區分婁개조費支給條例廢止條例案

의안 번호	93
----------	----

제출년월일 : 1992. 7. 31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 의료보험법제7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4조제3항 및 보사부 고시(제88-69호, 88.11.10)에 의하여 1989년 7월1일부터 서울특별시가 지역의료보험지역으로 결정되어 서울특별시 저소득 주민도 당연적용피보험자가 되고,
- 의료보호법(법 제4353호, 1991.3.1)제8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만도 의료보호대상이 됨에 따라,
- 서울특별시영등포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에 의하여 저소득층 임산부에게 지급되던 분만개조비 지급대상자가 없어짐에 의거 서울특별시영등포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 폐지.

2. 주요골자

- 서울특별시영등포구 분만개조비지급조례(1988. 5. 1, 조례제52호)로 제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분만개조비지급조례 폐지.

3. 관련법규

- 의료보험법 제7조
 - 제7조(당연적용피보험자) ①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수등에 따라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는 당연히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피보험자(이하 "당연적용피보험자"라 한다)가 된다.
 - ②주민의 소득수준, 의료시설의 분포상황등에 따라 대통령이 정하는 지역의 주민은 당연적용피보험자가 된다.
- 의료보험법시행령제4조제3항
 - 제4조(당연적용피보험자)③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적용피보험자로 되는 자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의 주민으로 한다.(개정 88. 7. 22)

○ 보건사회부고시 제88-69호 지역의료보험적용지역

의료보험법 제7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의료보험 적용지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8년 11월 10일

보건사회부장관

(가)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직할시 및 전국의 모든 시

(나) 급여개시시기 : 1989년 7월 1일부터

○ 의료보호법 제8조 제1항

· 제8조(보호의 내용) ①이법에 의한 의료보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진 찰
2. 처치, 수술 기타의 치료
3. 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지급
4. 의료시설에의 수용
5. 간 호
6. 이송 기타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
7. 분 만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特別市永登浦區分娩개조費支給條例廢止條例案

서울특별시영등포구 분만개조비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